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49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유동수 · 김남근 · 박민규
김현정 · 전용기 · 이인영
허성무 · 박지원 · 김남희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를 “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이거나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를 “그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이거나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면서 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로 한다.

3. “국외상장법인”이란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